

「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하반기)」 공고

밀양시에서는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 8. 26.

밀양시장 안병구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하반기)
- 신청기간: 2024. 9. 1. ~ 2024. 9. 20.
- 지원대상: 밀양시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신혼부부
- 지원내용: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차지원(3%이내)
- 지원금액: 전연도 하반기(7~12월)이자 - 상반기 모집 및 지급(최대 75만원)
당해연도 상반기(1~6월분)이자 - 하반기 모집 및 지급(최대 75만원)
- 지원기간: 매년 상·하반기 신규 신청 접수, 연 2회(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간 지원)
- 지급방법: 사업대상자 계좌입금

2. 신청 자격

-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

1. 공고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인 가구
2.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
3.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4.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2023년 귀속분 소득기준)
5. 주택기준

①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m²이하)

② 주택가격 4억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③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 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④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 구입(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

6. 대출용도 :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용도만 해당

- 신용, 일반대출, 마이너스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불가

○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 도내 지자체(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당해연도에 지원 받은 자
- 대출 용도가 주거 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마이너스 대출 제외)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그 밖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직인날인)여야 함

	제 출 서 류	발 행 처
①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방문신청 시)	신청인
②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세대원 확인 및 등본상 거주사실 확인) -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정부24)
③	혼인관계증명서(혼인기간 확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④	가족관계증명서(형제,자매 확인) - 신청자, 배우자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	인터넷(대법원전자가족 관계등록시스템)
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주택 확인)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 ※ 상반기신청자 : 2022~2023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 하반기신청자 : 2023~2024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시·군·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서류만 인정 (인터넷 발급서류 불가)
⑥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등기접수일, 권리관계, 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⑦	주택매입계약서(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 ※ 사본제출	신청인
⑧	건축물대장(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정부24)
⑨	금융거래확인서(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 - 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대출은 지원 불가	금융기관
⑩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이자율, 이자액 확인)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 금(이자) 계산서 등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 + 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⑪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연소득 확인) - 부부 모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근무처 국세청 홈택스
⑫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신청인
⑬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일 경우만) - 자녀수에 태아 포함	신청인

※ ②, ④, ⑤ 관련 유의사항

	제 출 서 류	발 행 처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세대원 확인 및 등본상 거주사실 확인) -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정부24)
②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 신청자, 배우자 각각 등본 및 초본 발급 제출(경남 내 주소일 경우 인정) -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소를 달리하고 있는 사실 증빙 서류 추가 제출(예 : 직장으 로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서(형제,자매 확인) - 신청자, 배우자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대법원전자가족 관계등록시스템)
④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하였을 경우 지원 제외 대상이 되므로 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제출 · 신청자의 부(아버지) 또는 모(어머니) 기준으로 1부, 배우자의 부(아버지) 또는 모 (어머니) 기준으로 1부 → 총 2부 제출 ※ 부모님이 이혼 하였을 경우 형제, 자매가 나오는 분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주택 확인)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 ※ 2022~2023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시·군·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분만 인정 (인터넷 발급분 불가)
⑤	<재산세(주택분) 납부자> - [예시1] 참고 - 해당 지자체 주택 과세 증명서 1부(해당 지자체 기준) - 경상남도 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해당 지자체 제외) - 전국 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경상남도 제외) <재산세(주택분) 납부내역이 없는자> - [예시2] 참고 - 전국 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	

4.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자격요건 충족 신청자

※ 지원금액 초과 시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고배점순으로 선정
【우선순위 배점표】

평가항목	혼인기간	부부 합산연소득	자녀수
	30점	40점	30점
배점 (100점)	4년 이상 ~ 5년 이하 : 30	3천만원 미만 : 40	3자녀 이상 : 30
	3년 이상 ~ 4년 미만 : 25	3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 35	2자녀 : 25
	2년 이상 ~ 3년 미만 : 20	4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30	1자녀 : 20
	1년 이상 ~ 2년 미만 : 15	5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 25	무자녀 : 15
	1년 미만 : 10	6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 20 7천만원 이상 ~ 8천만원 이하 : 15	*자녀수에 태아 포함

※ 동점자일 경우 우선순위 : 1. 자녀수가 많은 가구

2. 부부합산 연소득이 낮은 가구

5. 유의사항

- 실제 이자를 납부한 금액이 최대 지원액(75만원) 이하일 경우 실제 납입금액만 지원합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 및 향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등 지원사업 신청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제외대상으로 확인 시 선정 취소됩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가 미흡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서식1]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혼인신고일 (혼인관계증명서상)	년 월 일	연락처(HP)	(신청인) (배우자)
소득기준	부부연소득 (2023년도)	(신청인) (배우자)	원 원	자녀 유무 ☒ (태아포함) ☐ 무자녀 ☐ 1자녀 ☐ 2자녀 ☐ 3자녀이상
가족사항 (주민등록등본 의 세대원과 일치해야함)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생년월일 (0000-00-00)	주택소유여부 (소유/공동소유/미소유)
구입주택 현황	주택소유자		매도자	
	구입일 (등기상 접수일)		주택유형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 소			
	매입가격	원	주택전용면적	m ²
대출현황	대출금액	원	대출잔액 (공고일 기준)	원
	대출이자율		대출기간	
	대출금융기관		대출용도	
지급계좌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				
첨 부 서 류	①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② 주민등록 등본, 초본 부부 각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배우자 부모기준-공고문 유의사항 참고) 각 1부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전국기준 발급-공고문 유의사항 및 예시참고) 각 1부 ⑤ 대상주택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부. ⑥ 주택매입계약서(사본) 1부. ⑦ 건축물대장 1부. ⑧ 금융거래확인서(금융기관 날인) ⑨ 대출이자 납입 서류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대출금이자계산서 등 ※ 주택금융공사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⑩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부부 모두) 1부 ⑪ 신청인 통장사본 1부 ⑫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일 경우만) 1부			

[서식2]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서약서

신청자(본인)는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서 아래의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이 제출한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음을 신청인(본인)은 동의합니다.

신청자격 등 서약 사항		신청인 자필서명
혼인가간	신청자(본인) 및 배우자는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임을 서약함	
전국기준 1주택 가구	신청자(본인)는 공고일까지 세대구성원 합산하여 전국기준 1주택 가구임을 서약함.	
연소득	신청자(본인)와 배우자 합산하여 연소득 8,000만원 이하임을 서약함	
제외 대상	신청자(본인) 또는 배우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서약함	
대출	신청자(본인) 또는 배우자는 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의 용도로 대출하였음을 서약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 귀하께서는 아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목적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업무처리에 이용
수집·이용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재산세, 직계존·비속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대출잔액, 대출 이자 납부내역, 대출용도, 계좌번호 등
보유 기간	신청인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 지급까지 이용되며, 지원금 지급 후 5년간 보유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목적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집
수집·이용항목	주민등록번호
보유 기간	신청인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 지급까지 이용되며, 지원금 지급 후 5년간 보유

▶ 위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경상남도 내 시·군, 읍·면·동, 금융기관 등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업무처리, 대출이용현황 확인에 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재산세, 대출이용현황 등	이용목적 확인 시점까지

▶ 위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위의 신청자격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서약(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동의자)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약자(동의자)	배우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약자(동의자)	세대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약자(동의자)	세대원	성명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

참고1

신청서류 참고사항

☐ [예시1] 재산세(주택분) 납부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Local Tax Assessment Certificate					
납세자 Taxpayer	성명(법인명) Name(Name of Corporation)				
	주소(영업) Address(Business)				
상 호 Company Name					
과세대상 Tax Objects					
세 목 Tax Items	부과연월 Tax Year-Month	부과유형 Tax Pattern	과세번호 Tax No.	세 액 Tax Amount	비 고 Remarks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함녕군,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합천군] [과세년도 : 2021 ~ 2022 년] 재산세 (주택) 위와 같이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					

○ 경상남도 주택 미과세 증명서(해당 지자체 제외)

- 재산세(주택분)를 납부한 지자체를 제외한 17개 시·군에 대한 과세 사실없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Local Tax Assessment Certificate					
납세자 Taxpayer	성명(법인명) Name(Name of Corporation)				
	주소(영업) Address(Business)				
상 호 Company Name					
과세대상 Tax Objects					
세 목 Tax Items	부과연월 Tax Year-Month	부과유형 Tax Pattern	과세번호 Tax No.	세 액 Tax Amount	비 고 Remarks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과세년도 : 2021 ~ 2022 년] 재산세 (주택) 위와 같이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					

○ 전국 주택 미과세 증명서(경상남도 제외)

- 경상남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대한 과세 사실없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Local Tax Assessment Certificate					
납세자 Taxpayer	성명(법인명) Name(Name of Corporation)				
	주소(영업) Address(Business)				
상 호 Company Name					
과세대상 Tax Objects					
세 목 Tax Items	부과연월 Tax Year-Month	부과유형 Tax Pattern	과세번호 Tax No.	세 액 Tax Amount	비 고 Remarks
재산세(주택)	2021-07	정기분			
지역자원시설세(소방)	2021-07	정기분			
지방교육세	2021-07	정기분			
소 계					
재산세(주택)	2021-09	정기분			
지역자원시설세(소방)	2021-09	정기분			
지방교육세	2021-09	정기분			
소 계					
재산세(주택)	2022-07	정기분			
지역자원시설세(소방)	2022-07	정기분			
지방교육세	2022-07	정기분			
소 계					
합 계					
				총 체납액 :	0 원 (총 0 건)
				총 결손액 :	0 원 (총 0 건)
위와 같이 과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tax assessment is true and correct.					

☒ 해당 지자체 주택 과세 증명서(해당 지자체 기준)
- 재산세(주택분)를 납부한 내역

☐ [예시2] 재산세(주택분) 납부내역이 없는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Local Tax Assessment Certificate					
납세자 Taxpayer	성명(법인명) Name(Name of Corporation)				
	주소(영업) Address(Business)				
상 호 Company Name					
과세대상 Tax Objects					
세 목 Tax Items	부과연월 Tax Year-Month	부과유형 Tax Pattern	과세번호 Tax No.	세 액 Tax Amount	비 고 Remarks
[전국 자치단체]					
[과세년도 : 2021 ~ 2022 년]					
재산세(주택)					
위와 같이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					

☒ 전국 주택 미과세 증명서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에 대한 과세 내역 없음

[지원금액]

□ 지원금액이 어떻게 지원되는 건가요?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이내)이 지원내용입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잔액 1억원, 이자율 1%일 경우

지원금액: $50,000,000\text{원} \times 1\% \div 2(6\text{개월}) = 25\text{만원을 지원}$

- 대출잔액 1억원, 이자율 4%일 경우

지원금액: $50,000,000\text{원} \times 3\% \div 2(6\text{개월}) = 75\text{만원을 지원}$

- 대출잔액 4천5백만원, 이자율 4%일 경우

지원금액: $45,000,000\text{원} \times 3\% \div 2(6\text{개월}) = 67\text{만}5\text{천원을 지원}$

- 대출잔액 4천5백만원, 이자율 1%일 경우

지원금액: $45,000,000\text{원} \times 1\% \div 2(6\text{개월}) = 22.5\text{만원을 지원}$

※ 변동금리일 경우 반기 평균 이율을 산출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3프로 이내 분을 지급

□ 이자 지원금은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 반기(1~6월 또는 7~12월)에 납부하신 대출이자 합산금액(원금제외한 이자만) 75만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 합산금액이 75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지원금액인 75만원이 지급됩니다. 합산금액이 75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기간 이자 지급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지원기준]

☐ 전용면적이 85m²이하인데 소수점도 상관이 없나요?

○ 전용면적 85.99m²까지 가능합니다.

☐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출이자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분양권에 관한 계약서와 해당 주택에 대한 대출로 이자를 납부한 내역 등 지원기준에 충족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 반기마다 신청 절차는 동일한가요?

○ 반기마다 지원대상자 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절차는 동일합니다.

☐ 자녀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 미성년 자녀인 경우 가구원에 포함되며, 임신 중인 경우에도 병원 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자녀로 인정됩니다.

☐ 신용, 일반, 마이너스 대출 등을 받아 주택자금에 사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신용, 일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주택자금에 사용한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내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지원조건에 해당되시면 외국인이여도 가능합니다.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신혼부부는 초혼만 가능한가요?

○ 초혼, 재혼 모두 가능합니다.

☐ 2023년 하반기(7~12월)분 이자납부한 내역에 대해서 2024년 상반기 공고일 전에 대출금액 전액상환한 경우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 신청서류의 대출잔액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공고일 이전에 대출 상환을 한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대출용도]

☐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의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주택구입 목적자금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주택 구입 시 공동명의로 된 경우 상관이 없나요?

- 주택명의를 공동명의로도 상관이 없으나, 주택계약자 및 대출실행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우자와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부 모두 등본상 주소지가 경남도내이면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대상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주택계약자 및 대출실행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나요?

-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주택계약자 및 대출실행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지원되지 않는 주택은 어떤 것인가요?

- 공부상(공적인 장부-건축물대장 등) 주택용도가 아닌 경우(지하실, 대피소, 옥탑방 등)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지원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통장사본의 경우 신청인 통장사본을 제출해야되나요?

- 신청자 본인은 대출실행자, 대출명의자의 통장사본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은 신청자 본인만 제출하면 되나요?

- 신청자와 배우자가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자 본인만 제출하면 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소를 달리 할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발급해서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도 추가 제출해주셔야 됩니다.(예: 직장으로 인해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어떻게 발급 받아야 되나요?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하였을 경우 지원제외 대상이 되므로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 신청자의 부(아버지) 또는 모(어머니) 기준으로 1부, 배우자의 부(아버지) 또는 모(어머니) 기준으로 1부 이렇게 총 2부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부모님이 이혼 하였을 경우 형제, 자매가 나오는 분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자녀가 미성년자인데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되나요?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미과세증명서)를 전국기준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 미과세증명서는 무엇인가요?

- 미과세증명서는 과세한 실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서로 주택분 재산세가 없다는 걸 증빙하는 서류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자임을 증빙하기 위해 모두 제출해야되는 서류입니다.
※ 시·군·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발급(인터넷 발급분 불가)

□ 재산세를 내고 있는 사람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 전국기준으로 재산세(주택분)을 발급해주셔야 됩니다.(공고문 예시 참고)
※ 시·군·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발급(인터넷 발급분 불가)

□ 건축물대장의 경우 전유부만 제출해도 되나요?

- 집합건축물일 경우 표제부와 전유부 제출입니다.

□ 주택매입계약서는 원본만 있는데 사본 제출해도 되나요?

- 주택매입계약서는 원본이 아닌 사본 제출입니다.

□ 주택매입계약서의 경우 매매계약서만 해당되나요?

- 분양권에 관한 계약서도 해당됩니다.

□ 금융거래확인서 및 대출납입증명서류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모두 금융기관에 요청하시고, 대출납입증명 서류의 경우는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어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 계산서 등 발급가능한 서류를 은행에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고, 주택금융공사의 경우는 거래내역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금융거래확인서 및 대출납입증명서류는 모두 금융기관 날인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 연소득 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 연소득은 세전 기준입니다.

□ 연소득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공고일 기준 부부의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을 제출해야 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 중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2022년 귀속분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1년 이상 근로하였으나 전년도 소득이 12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 전년도 소득증빙자료와 함께 당해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정확한 소득확인을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를 담당공무원이 추가제출 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대표이며 월급을 받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만 제출하면 되나요?

- 법인의 대표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을 제출 해주셔야 종합소득이 확인 가능하므로 반드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용도]

□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의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주택구입 목적자금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용, 일반, 마이너스 대출 등을 받아 주택자금에 사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신용, 일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주택자금에 사용한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내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기관이란?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9.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0.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